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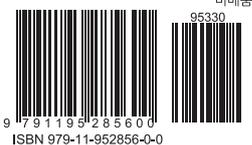
# 한국의 LGBTI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 인권 현황 2013

발행 2014년 5월 17일

 **SOGILAW**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 [sogilaw.org](http://sogilaw.org) • 메일 [sogilp.ks@gmail.com](mailto:sogilp.ks@gmail.com)
- 전화 0505.300.0517 • 팩스 02.363.5856
- 주소 (121-84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성산동 635-9) 인권중심사람 2층

### SOGI 콜로키움

- 1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2013.6.29.)
- 2회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2013.8.20.)
- 3회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  
-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건을 중심으로(2014.4.26.)
- 4회 균형법과 동성애 -균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2014.5.21.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주최)

### 법적 소송/신청 대리, 자문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 기획신청, 대리 (서울서부지법 외 다수)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자문 활동(국가인권위원회 등)

## 연혁

2011. 8. 창립  
2014.3.10. 인권재단사람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인권중심사람 입주
- 간담회** 2011.9.30. 타니구치 히로유키 교수(타카오카 법과대학) 초청 간담회 주최(성소수자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 발행** 2012.6.1.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길잡이 트랜스로드맵 제작 도움(성적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 동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작)
- 학술대회** 2012.10.27. “2012년,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 참가(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 조사연구** 2013.6.1.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착수 (2014.5.30. 종료) (발주 기관 :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행** 2013.3.15.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없이 성별정정 가능
- 강연** 2013.7.31.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초청강연 주최(장하나·진선미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동주최)
- 발행** 2013.8.9. [논평]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 토론회** 2013.9.14.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최(〈당연한 결혼식〉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 발행** 2013.11.19. [논평]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 발행** 2013.12.31 [기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임연구회 소개 -SOGI법정책임연구회, 법과 사회, 통권 제45호,
- 발행** 2014.5.17.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인권현황

# 2013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을 펴내며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됐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면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규정하여,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규범이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2003년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있었으며,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결정과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운동, 2007년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활동, 2010년 군형법 제92조 '계간' 처벌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과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원안통과를 위한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 등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제도적 변화와 사건, 운동은 끊임없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비하여, 관련 사건과 운동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매년 발행하는 '한국인권보고서'에 2007년부터 성소수자 인권분야를 간략히 기록하고 있으나, 주제와 분량의 제한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보면 한국은 언어적, 지역적 장벽으로 인하여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관한 국가정보가 부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매년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번역·배포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체계는 국제사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관한 이슈의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발간을 제안하고 사건목록을 정리한 한가람 변호사, 집필한 나영정 연구원, 정현희 연구원께 특별히 감사를 전하며, 감수를 맡은 류민희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지혜 연구원, 그리고 후원을 해주신 서신님, 광민영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읽히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황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의미화 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 서 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장



목  
차

I. 2013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개관	08	
II. 한국의 무지개 지수	11	
III. 영역별 현황	15	1. 범죄화
	17	2. 차별철폐와 평등
	19	3. 재화와 서비스 제공
	20	4. 교육/청소년
	23	5.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25	6. 군대
	26	7. 경찰
	27	8. 혐오 표현
	28	9. 괴롭힘/폭력/혐오범죄
	29	10. 성별정정
	31	11. 가족구성권
	32	12.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33	13. 사회보장
	34	14. 난민
	35	15. 여론/미디어
	37	16. 조사/연구
IV. 한국의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39	
부록	48	1. 2013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원문 링크
	49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51	3.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2006.11)

# 한국의 LGBTI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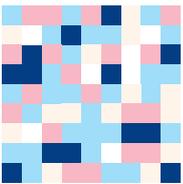
## 인권 현황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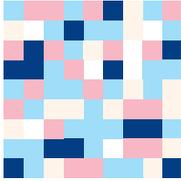
### I. 2013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개관

II. 한국의 무지개 지수

III. 영역별 현황

IV. 한국의 성적 지향 · 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 I. 2013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개관

2013년은 한국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제도적 이슈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었던 해이다. 중요한 제도적 이슈로 일컬어지는 동성애 비범죄화, 차별금지법제의 마련,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의 방지와 인권보장, 성전환자 성별변경제도 모두가 중요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다루어졌다.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도 위기와 기회를 함께 경험한 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은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면서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획들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2013년 초부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대를 이유로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1월부터 균형법상 성폭력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남성간 성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나 폐지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여성간의 성행위 역시 명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동성간음죄’로 개정하려는 한 국회의원의 시도가 있었다.

3월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현행 대법원예규와 달리 남성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FTM)에 대하여 법적 성별의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후 일부 법원에서나마 성기성형을 하지 않거나 못한 다수의 FTM 성전환자들이 성별정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3년 9월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문화행사로서 김조광수와 김승환의 동성결혼식이 열려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결혼식을 앞두고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에 대한 실천적·이론적 흐름들이 형성되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도 이어졌다. 군대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한 고민을 하던 병사가 고립된 채 자살에 이르렀고,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돈을 갈취하는 사건들도 발생하였다. 성소수자들이 캠페인 차원에서 게시하고자 한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게시거부처분을 받는 사태가 2012년에 이어 계속되었고, 성소수자들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공간사용을 신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사건들이 이어졌다.

동성애혐오적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대해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물의를 빚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들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가이드북을 번역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어판 서문을 받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발간하였다.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이어지기도 하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반동성애 단체와 보수 개신교계의 반대로 제정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반동성애 단체와 보수 개신교계는 교회조직과 많은 자원을 동원하여 성소수자와 관련한 제도 마련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개신교계 언론을 통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확대하였고, 진보적 언론사 지면에도 의견 광고를 통해 동성애혐오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소수자 단체들은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는 동시에, 퀴어문화축제 등 대규모 문화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캠페인 활동, 다양한 자료의 발간, 토론회의 개최, 연구조사의 진행 등의 인권옹호 활동을 전개했다.

# 한국의 LGBTI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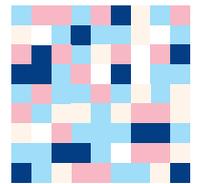
## 인권 현황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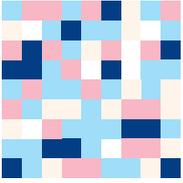
I. 2013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개관

## II. 한국의 무지개 지수

III. 영역별 현황

IV. 한국의 성적 지향 · 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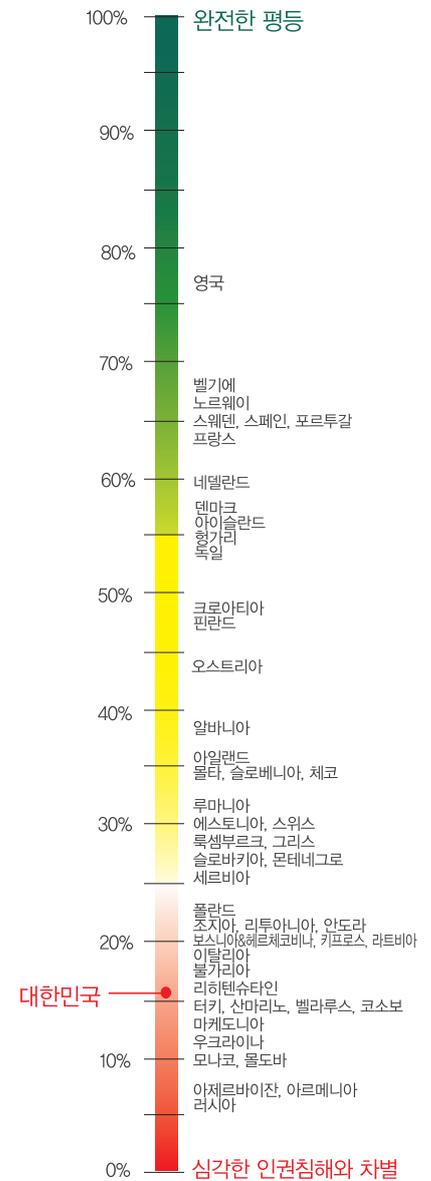




## II. 한국의 무지개 지수 [S. Korea Rainbow Index]

다음의 표는 「ILGA-Europe Rainbow Map (Index) May 2013」의 틀과 「ILGA-Europe Rainbow Map Explanatory Document」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한국에 마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이다.<sup>1)</sup> 이 지도와 지수, 설명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 [http://www.ilga-europe.org/home/publications/reports\\_and\\_other\\_materials/rainbow\\_europe](http://www.ilga-europe.org/home/publications/reports_and_other_materials/rainbow_europe)

이에 따라 계산하면 한국은 15.15%를 기록하는데, 이는 유럽 49개국을 조사한 「ILGA-Europe Rainbow Map May 2013」에서 38위를 기록한 리히텐슈타인(1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터키(14%), 산 마리노(14%), 벨라루스(14%), 코소보(14%), 마케도니아(13%), 우크라이나(12%), 모나코(10%), 몰도바(10%), 아제르바이잔(8%), 아르메니아(8%), 러시아(7%)이다. 상위국가로는 영국(77%), 벨기에(67%), 노르웨이(66%), 스웨덴(65%), 포르투갈(65%) 등이 꼽혔다.



- 전국적 적용 [national/federal application]
- ◎ 일부 지역에만 적용 [applicable in some regions only]

평등과 차별 금지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헌법(성적지향) [Constitution(sexual orientation)]	
	고용(성적지향) [employment(sexual orientation)]	
	재화와 용역(성적지향) [goods & services(sexual orientation)]	
	기타 생활영역(성적지향) <sup>2)</sup> 구급시설 영역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ther spheres of life(sexual orientation)]	●
	평등기구(성적지향) <sup>3)</sup>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권한과 관련하여, 조사의 대상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의 교육·이용 등에 있어서의 우대·배제·구별이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고용, 재화와 용역 영역에서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불완전하나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equality body mandate(sexual orientation)]	●
	평등정책기본계획(성적지향) <sup>4)</sup>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와 관련한 항목이 있으나,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뿐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평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형법 등의 개정으로 남성 역시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이성간 강간의 경우만 해당된다. 남성간 강간에 대해서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되게 되었다.) [equality action plan(sexual orientation)]	
	헌법(성별정체성) [Constitution(gender identity)]	
	고용(성별정체성) [employment(gender identity)]	
	재화와 용역(성별정체성) [goods & services(gender identity)]	
	기타 생활영역(성별정체성) <sup>5)</sup> 교육 영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ther spheres of life(gender identity)]	◎
	평등기구(성별정체성) [equality body mandate(gender identity)]	
	평등정책기본계획(성별정체성) [equality action plan(gender identity)]	
	법률 (성별표현) [law (gender expression)]	
	법률 (간성) [law (intersex)]	
가족 (Family)	혼인평등 [marriage equality]	
	동반자관계 등록(결혼과 유사한 권리) [registered partnership(similar rights to marriage)]	
	동반자관계 등록(제한된 권리) [registered partnership(limited rights)]	
	동거 [cohabitation]	
	공동입양 [joint adoption]	
	의붓자녀 입양 [second-parent adoption]	
	공동양육 당연인정 [automatic co-parent recognition]	
	인공수정(커플)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couples)]	
	인공수정(싱글)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singles)]	
	성전환자의 이성혼 <sup>6)</sup> 성전환자는 법적 성별을 변경한 다음에야 혼인을 할 수 있다. [trans people can marry a person of the other gender]	●

편견을 동기로 한 표현과 폭력 (Bias motivated speech/violence)	혐오범죄 방지에 관한 법(성적지향) [hate crime law(sexual orientation)]	
	혐오표현 방지에 관한 법(성적지향) [hate speech law(sexual orientation)]	
	혐오방지정책(성적지향) [policy tackling hatred(sexual orientation)]	
	혐오범죄 방지에 관한 법(성별정체성) [hate crime law(gender identity)]	
	혐오표현 방지에 관한 법(성별정체성) [hate speech law(gender identity)]	
	혐오방지정책(성별정체성) [policy tackling hatred(gender identity)]	
	법률(간성) [law(intersex)]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 [Legal gender recognition]	절차(들)의 존재 [existence of procedure(s)]	●
	개명 [name change]	●
	공적 기록상 성별의 변경 [change of gender on official documents to match gender identity]	●
	‘성주체성장애’ 진단/심리학적 소견 요건 없음 <sup>7)</sup>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요구함 [no ‘Gender Identity Disorder’ diagnosis/psychological opinion required]	
	필수적인 의료적 개입 요건 없음 <sup>8)</sup>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no compulsory medical intervention required]	
	필수적인 외과적 개입 요건 없음 <sup>9)</sup>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수술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함 [no compulsory surgical intervention required]	
	필수적인 생식능력제거 요건 없음 <sup>10)</sup>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요구함 [no compulsory sterilisation required]	
필수적인 이혼 요건 없음 <sup>11)</sup>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법원이 신청인에 대해 “현재 혼인중인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혼인중이 아닐 것을 요구함 [no compulsory divorce required]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association & expression]	최근 5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공공행사 열림 <sup>12)</sup> 2013년 서울 마포구청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커밍아웃 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홍익대학교 부근 ‘걷고 싶은 거리’의 무대 사용을 신청한 데 대해 ‘성소수자 행사가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며 ‘어린 학생들이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public events held, no state obstruction(last 5 years)]	
	최근 5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단체들이 운영됨 [associations operate, no state obstruction(last 5 years)]	●
	전국적/지역적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 없음 [no laws limiting expression(national/local)]	●
난민 [Asylum]	법률(성적지향) [law(sexual orientation)]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적지향) <sup>3)</sup> 이 항목에 관해 「ILGA-Europe Rainbow Map Explanatory Document」는 (i) 일반적인 성소수자 평등정책기본계획에 특정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거나, (ii) 난민 영역에 관하여 특정한 분야별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거나, (iii) 난민심사기관 직원 등 전문가를 위한 일반화된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거나, (iv) 성소수자 난민 영역과 관련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난민심사기관의 전문적 부서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법원은 파키스탄 출신 게이, 나이지리아 출신 게이, 우간다 출신 레즈비언(2014. 4.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대하여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여 난민을 인정한 바가 있다.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sexual orientation)]	
	법률(성별정체성) [law(gender identity)]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별정체성) <sup>4)</sup> 트랜스젠더에 대해 난민을 인정한 사건은 없음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gender identity)]	
계 [Total]		15,15%

# 한국의 LGBTI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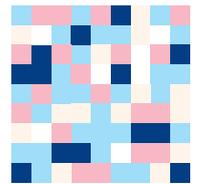
## 인권 현황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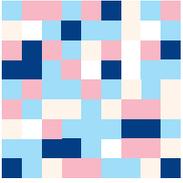
I. 2013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개관

II. 한국의 무지개 지수

### III. 영역별 현황

IV. 한국의 성적 지향 · 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 Ⅲ. 영역별 현황

#### 1. 범죄화

##### ▶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폐지 요구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제92조의5에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조항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미국 육군전시법상 ‘소도미(sodomy)’ 처벌조항을 계수한 것으로서,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군형법 제92조에 규정하여 왔다. 2013년 개정에서는 남성간 성행위를 ‘닭의 행위’로 비하하여 비판을 받아온 “계간”이라는 용어<sup>15)</sup> 국가인권위원회,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06. 1.가 “항문성교”로 대체되었다.

“항문성교”라는 용어의 도입은 국방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sup>16)</sup> 문광섭,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3. 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2013. 3. 애초에 이 조항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김광진은 “계간”이라는 구성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sup>17)</sup> 의안번호 190326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 9. 김광진 대표발의), 국회의원 권성동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주요내용’에는 “계간”을 “항문성교”로 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

으나 개정안 본문에서는 “계간”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제출하여 개정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의안번호 19036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2. 12. 권성동 대표발의) 참조. 이렇게 옹어만 바뀐 데 대해 인권단체들은 “‘계간’의 대체문구가 겨우 ‘항문성교’였나”<sup>18)</sup>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보도자료, 2013. 3. 6. 라며 반발하면서 동성간 성행위의 비범죄화를 요구하였다. 한편, 국회의원 남인순은 2013년 1월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이 조항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sup>19)</sup> 의안번호 190339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 23. 남인순 대표발의) 이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2013.4.25. 군형법 상 동성간의 간음 처벌 개정안(민홍철의원) 규탄 기자회견



위와 같은 개정 이후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국회의원 민홍철은 여성간의 성행위를 포함하여 “동성간의 간음”을 처벌하는 개정안 제출을 시도하여 물의를 빚었다. “항문성교”가 이성간의 행위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여군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제출의 이유였다.<sup>20)</sup> 국회의원 민홍철,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요청, 2013. 4. 19.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들은 여성간의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동성간의 성행위만을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비판하였다.<sup>21)</su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2013. 4. 25. 그러자 민홍철 의원은 이성 군인간의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면 서 개정시도를 중단하였다.<sup>22)</sup> 「민홍철 의원 군법상 ‘동성간 간음죄’ 문구서 ‘동성’ 삭제키로」, 〈헤럴드경제〉 2013. 4. 25. 자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의 폐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은 2013년 6월 5,690명의 서명을 받아 이 조항 폐지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sup>23)</sup>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2013. 6. 26. 대표 입법청원인은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조광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대표였다. 뒤이어 8월에는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중 하나로서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며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면담하였고,<sup>24)</sup>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3. 8. 22. 11월에는 전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재차 폐지안 발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폐지 입법청원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2013년 4월 국회의원 진선미는 이 조항의 폐지안을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하였으나, 발의 요건인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다(이후 2014년 3월에야 진선미 의원은 이 조항의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sup>25)</sup> 의안번호 190974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3. 17. 진선미 대표발의))

## 2. 차별철폐와 평등

### ▶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가 반동성애 단체 및 보수기독교계의 공격으로 철회됨

2013년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로써 19대 국회에서 김재연 의원에 이어 총 세 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었다.<sup>26)</sup> 19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철회 상황 ① 의안번호 1903793(최원식의원 등 12인), 발의 2013-02-20, 철회 2013-04-24 ② 의안번호 1903693(김한길의원 등 5인), 발의 2013-02-12, 철회 2013-04-24 ③ 의안번호 1902463(김재연의원 등 10인), 발의 2012-11-06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세 개의 법안은 모두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두 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동성애 단체 및 보수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허용법이기 때문에 제정을 막아야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정을 가로막기 위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조직적으로 퍼부었다. 결국 2013년 4월 24일, 법안이 발의된 지 겨우 두 달 만에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법안을 자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의 법안을 철회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당시 두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지나친 왜곡과 곡해가 가해져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새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3.4.22. 차별금지법안 철회 반대 기자회견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였다. 그러나 위 법안은 종교계, 재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입법예고된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사유(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가 삭제된 형태로 17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인권·시민단체들이 이 사태를 비판하였고,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만으로 폐기되었다.

2007년 사태 이후 한국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받고 있다.<sup>27)</sup>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E/C.12/KOR/CO/3), 2009. 12. 17.;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EDAW/C/KOR/CO/7), 2011. 7. 29.; 유엔아동 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RC/C/KOR/CO/3-4), 2011. 10. 6.;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15차, 1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ERD/C/KOR/15-16), 2012. 9. 5. 그러나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 역시 보수기독교계의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은 독자적으로 준비한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권영길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으나 이 또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가 만료되었다. 2012년 한국정부는 또다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sup>28)</sup>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PR, A/HRC/22/10)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반인권적,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인권, 여성, 성소수자, 장애, 이주 운동 단체들은 이러한 혐오에 맞서며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성소수자 인권 보장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포함하는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과천시 2013년 8월,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제16조(성소수자 인권 보장)에서는 '시장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조① '성평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자문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서울 성북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주민인권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선언에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29)</sup> 「"성소수자 차별 없게" 성북주민 인권선언」, 〈서울신문〉 2013. 12. 1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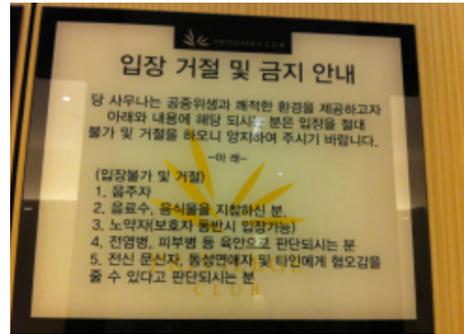
2010년 이후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움직임이 이어졌다. 2013년 6월에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강원도학생인권조례<sup>30)</sup>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13-10호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이에 앞선 1월에 입법예고되었으나 '성소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명시한 조례안이 반발에 부딪혀 제정이 보류되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역시 제정 이후 교육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난관에 처해있다. (참조 4. 학교/청소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동성애 여론을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소극적·부정적인 중앙정부의 태도와 대비되는 지자체의 노력은 그 의미가 있다.

### 3. 재화와 서비스 제공

#### ▶ '동성애자 입장 금지' 제재

전라남도 순천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전신 문신자, 동성연애자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의 입장을 거절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례가 2013년 3월 제보되었다.<sup>31)</sup> 「동성애자로 뒤흔히게 사우나 가고싶다」, 〈한겨레〉 2013. 4. 9.자

이 제보를 접수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는 이 호텔이 속한 호텔 브랜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안내문을 ‘적합하지 않은 조항으로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을 호텔 측에 요청하였고 호텔이 삭제 조치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보내와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sup>32)</sup>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순천 베네치아 호텔 사우나 성적소수자 혐오 게시물 대응 보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홈페이지(www.kscrc.org) 공지, 2013. 3. 22. 이 같은 자의적 서비스 정책은 동성애자에 대한



순천 B호텔의 동성애자 입장 금지 안내문

직접 차별에 해당하고, 안내문 자체에서 ‘동성애자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해를 끼친다’는 편견을 노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 ▶ 최초의 지역 기반 성소수자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서울 성북구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지역 기반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5,900만원을 지원받아 2014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무지개센터’는 성소수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및 스트레스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걸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sup>33)</sup>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명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더 많은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2013. 7. 4.

〈에스더기도운동〉,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 〈교회언론회〉 등 반동성애단체 및 보수 기독교계는 사업 선정 이전부터 ‘무지개센터’ 설립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센터 설립안 및 지원 결정을 철회하라는 등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sup>34)</sup> 「성북구에 혈세 5900만원 들여 ‘성소수자 상담소’ 설치 추진」, 〈국민일보〉 2013. 7. 3.자

## 4. 교육/청소년

### ▶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성소수자 학생의 자살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sup>35)</sup>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이 판결은 학교 내 집단괴롭힘이 심각한 오늘날, 보호감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학교를 오히려 면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선례를 남겼다.

200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A군은 가는 목소리와 여성스러운 행동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 및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을 당해왔다. 학교에서 실시한 우울척도검사 결과 A군은 우울 상태와 자살 충동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담임교사는 A군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살을 암시하는 A군의 메모 역시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A군의 부모에게 전학을 권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괴롭힘과 교사의 방관이 지속되는 도중 2009년 11월, A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 원심법원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학생의 자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교사의 사용자인 부산시청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sup>36)</sup> 부산고등법원 2013.2.28. 선고 2012나50445 판결 그러나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자살에 대하여 학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했다.

파기환송 이유는 1) 괴롭힘의 정도가 빈번하지는 않았고 주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이나 비난 정도였던 점을 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고 2) 사고 무렵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3) 담임교사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sup>37)</sup> 파기환송심법원은 2014년 2월, 대법원 판결취지대로 학교 측의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고, 다만 피해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3나51414 판결;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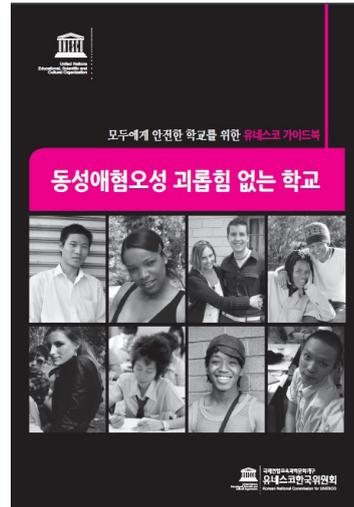
이 같은 판결은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괴롭힘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는 반복되는 일상적 공격으로 인해 고립, 위축, 불안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처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우울과 자살의 징후를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sup>38)</sup>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소년 성소수자를 자살로 몰고 간 집단폭력에 대해 학교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논평」, 2013. 8. 12.

동성애혐오성 괴롭힘(homophobia bullying)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도 문제이다. 학교에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괴롭힘을 구제하지 못할 경우 자해, 자살 등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남성청소년에 대한 집단괴롭힘의 상당수가 전형적 남성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구실로 성적 모욕을 수반하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성소수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 당국의 보호·지원의 책임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번역 발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학생인권실행팀 이반스쿨의 번역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발간(2013.10)하였다. 이 책은 2012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Education Sector Responses to Homophobic Bullying’을 번역한 것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책을 교사, 행정가, 정책입안자,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고 전하며, 처음으로 한국 교육 현장의 동성애 혐오를 언급하였다. “저의 모국,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대개 금기시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용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국가 기관이 오히려 문제의 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며 LGBT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0)</sup> 『반기문 “동성애 혐오, 지독한 인권 침해” 한국 첫 언급, 〈프레시안〉 2013.



5. 1. 자

▶ 학생인권조례 제정·정착에 대한 끊임없는 제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등 교육관련 국가기관들이 시도별로 제정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3년 7월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포함시켰는데, 당시 이 조례안에서 소수 학생으로

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에 대하여 교육부는 전라북도의회에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조례가 제정되자 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성 소수자 부문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 야기할 수 있음” (교육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38조 관련)

위와 같이 성소수자의 권리보장이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매우 차별적인 교육부의 의견은, 2012년 1월 서울시의회에서 제정, 공포되었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도 똑같이 제시된 것이었다.<sup>41)</sup>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반발, 〈YTN〉, 2012. 1. 9.자. 교육부는 성소수자 권리보장에 대한 반대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각하됨으로써 종결되었다.<sup>42)</sup> 『대법원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청구 각하』, 〈세계일보〉 2013. 11. 28.자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후,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의 차별금지와 권리보장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문용린 교육감이 2012년 12월 취임하게 되었다.<sup>43)</sup> 『새 서울시교육감 문용린號 ‘서울교육’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12. 12. 19.자 문용린 교육감은 결국 2013년 12월 30일,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는데,<sup>44)</sup>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 〈아시아경제〉 2013. 12. 30.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개인 성향’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한 말로 바꾸도록 하였다.(2014년 4월 현재, 이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 회부된 상태이다.<sup>45)</sup> 교육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2.7. 의안번호08-01706)

유사하게 2013년 강원도의회 의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강원학교인권조례)<sup>46)</sup>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 2013-10호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의 제정 시도 과정에서도, 강원도교육청이 원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동성애자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결국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하는 보수기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 조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도의회에서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sup>47)</sup> 『강원 학교인권조례 제정 일단 제동』, 〈한국일보〉, 2013. 3. 17.자

## 5.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 ▶ 성소수자 캠페인과 행사 개최에 대한 잇단 '불허'

2012년에 이어 성소수자 캠페인 및 행사 개최에 대한 불허가 계속되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3년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커밍아웃 문화제'를 위해 흥대 부근 '걷고싶은거리'의 무대 사용 신청서를 서울 마포구청에 제출했다. 마포구청은 '성소수자 행사가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 화합에 지장을 초래'하며 '어린 학생들이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라는 이유로 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이것이 반인권적 차별행위라는 여론이 일자 마포구청은 '특정 목적의 계몽·선전 활동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다. '무지개행동'과 마포구 성소수자 모임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등은 이를



2013.11.20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 규탄 기자회견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sup>48)</sup>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성소수자 단체 행사 장소 불허한 마포구청 규탄 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2013. 11. 20.

또, 몇몇 대학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취소되거나 상영 방해 행위가 발생하였다. 당초 서울 여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생자치모임의 주도로 기독교 사상 최초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주교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의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여대는 지난 9월 서울 도심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의 강연이 함께 예정되어 있었는데, 영화 상영 및 강연에 대한 항의 전화가 쇄도하자 학교 측의 압력으로 돌연 취소되었다. 고려대학교는 상영일 전날 일방적으로 상영회 장소 대여 취소를 통보하였다. 감리신학대학교에서는 홍보 포스터가 훼손되었고, 상영회를 취소한다는 허위 공지가 게시되는 등 노골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학생들도 협박성 문자에 시달렸다. 결국 학교 측은 장소사용 신청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이유로 장소 사용 불허를 통보하였다.<sup>49)</sup> 「'동성애 주교' 다큐, 대학가 잇단 상영불허」, <한겨레> 2013. 12. 15.자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의 성소수자 캠페인 및 행사에 대한 '불허' 처분은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혐오 표현을 용인하고 독려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SNS나 기독교언론 등에서 역시 이와 같은 성소수자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한 자축이 게재되는 등 동성애 혐오 표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서초구청과 마포구청은 관내 옥외광고 게시대에 성소수자 캠페인 현수막 게재 신청을 불

허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결과, 2012년 12월 서초구청에 대하여 시정 권고 결정이 이뤄졌고<sup>50)</sup>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26.자 12진정0485900 결정 뒤이어 2013년 6월 마포구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2012년 서초구청에 대한 결정은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6월 마포구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sup>51)</sup>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9.자 12진정0909300 결정에서는 ‘과도하게 광고 내용을 심사하였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광고 문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객관성과 적정성 여부를 따진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적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마포구청에 1)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2)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이러한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사용을 불허함으로써 차별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 ▶ 대법원, 퀴어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처분 취소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게이 커플의 로맨스를 다룬 김조광수 감독의 단편 영화 <친구사이?>(〈청년필름〉,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공동제작)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sup>52)</sup>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2009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친구사이?>가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한 바 있다. 제작사는 이러한 등급분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0년 9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영화가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고’,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sup>53)</sup>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 또,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것은 성적소수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된 것이다. <친구사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 재개봉될 예정이다.

## 6. 군대

### ▶ 고민 호소에도 지원 전무, 동성애자 병사 자살

2013년 1월 충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A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병사의 군생활 적응과 동성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다. A일병은 자살 시도에 대해 부대에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국방부 ‘생명의 전화’에 알리고 상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담관은 이 사실을 소속 부대에 알렸으나 재차 무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sup>54)</sup> 「동성애 고민하던 육군사병 자살」, 〈연합뉴스〉 2013. 1. 16.자

### ▶ 균형법 제92조의6,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 존치

대한민국 균형법은 군대 내 이성 간의 성행위는 징계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동성 간 성행위는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균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5에 의해 이성 간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2조의6을 통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균형법 제92조의6은 이성 간 성행위와 동성 간 성행위를 다르게 대우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사실상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다.('1.범죄화' 참조) 또 동성 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동성애자일 경우, 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강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일어났다고 쉽게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역시 처벌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은 2013년 6월 5,690명의 서명을 받아 이 조항 폐지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입법청원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동시에 균형법 제92조의6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을 폐지할 경우 '동성애자의 성폭력을 막을 수 없고, 병역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국가 병력이 약화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5%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 가해자가 동성애자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sup>55)</sup> 한국성폭력상담소,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4

## 7. 경찰

서울지방경찰청은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인권보호=책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찰서 순회 간담회>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수사 시 직무가이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고무적인 노력이 이뤄졌다. 직무가이드는 1) 성적체성에 대한 비밀 보장 2) 비하 용어 사용 및 명예훼손 발언 엄금 3) 조사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배려 등을 간략히 담고 있다.<sup>56)</sup>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침해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교육자료」, 2013. 2.

그러나 성적체성에 대한 비밀 보장은 잘 지켜지지 않아, 동성애자의 범죄 사실을 선정적으로 드러내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2013년 9월 10일자 한국일보(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및 2013년 10월 22일자 뉴시스에서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마약 투약을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2005년에 제정된 경찰청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제76조 '성적소수자의 수사'에서 성적체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제80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성적 소수자 유치인 당사자가 원할 경우 독거수용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8. 혐오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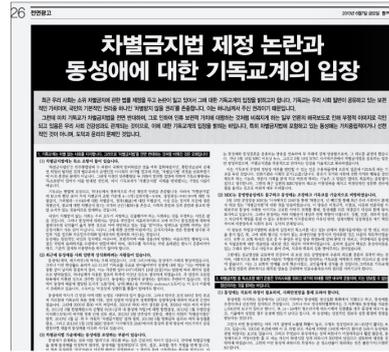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신문광고와 만화 등을 통해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 2013년 6월,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차별금지법 제정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다.<sup>57)</sup> <한겨레> 2013. 6. 7.자 26면 광고 ; <경향신문> 2013. 6. 18.자 15면 광고

이 광고에서 한국교회언론회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금지’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성적 문란, 종교적 탄압의 소지가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 동성애자는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수명도 짧아’, ‘동성애를 치유받도록 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등 비과학적이고 편견에 기반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면서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촉구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던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혐오 표현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에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신문사 측은 ‘재정문제와 광고국의 사정’이라는 소극적 답변만을 내놓았다.<sup>58)</sup> 「한겨레에 이어 경향 너마저...동성애 혐오 광고 논란」, <미디어오늘> 2013. 6. 18.자

한편,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대형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웹툰(인터넷 만화)을 통해 <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라는 만화를 6회에 걸쳐 게재하였다.<sup>59)</sup> 「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1화-6화」, 네이버 <도전만화>, 2013. 7. 13.~19., 교학사의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성적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기술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동성애를 도벽충동·소아성애 등과 같은 비도덕적인 충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그동안 성소수자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반대를 주도해온 단체로, 게재한 만화는 해당 교과서에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라는 기술을 삽입,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보수 기독교계의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네이버측은 ‘텍스트’에 대한 선정성과 폭력성은 심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혐오 표현을 제재할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시사했다.(2014년 4월 현재, 교학사 <생활과 윤리>는 이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수정 발간하였다).<sup>60)</sup>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2013. 8. 5.

여러 국가들에서 성적지향뿐만 아니라 타인종,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반인권적일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증오심을 강화하고 폭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글은 ‘사용자 콘텐츠 및 행동 정책’을 통해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적지향을 근거로 하여 특정 집단에게 적개심과 증오심을 조장하는 콘텐츠” 배포를 금하고 있다.



2013.6.7. 한겨레 전면 광고

## 9. 괴롭힘/폭력/혐오범죄

### ▶ 여자축구선수에 대하여 성별검사를 요구한 사건

여자축구선수의 성적체성을 이유로 리그 참가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의 7개 구단 감독 중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의 서정호 감독을 제외한 6개 구단 감독들이 2013년 10월 19일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중이던 인천에 모여 '한국여자축구 실업감독 간담회'를 열었고, 간담회의 결과 서울시청 여자 축구단 소속의 선수인 박은선의 성별을 확인해줄 것을 결의한 내용을 팩스를 통해 연맹에 전달하였다. 이 일은 11월 5일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박은선 선수와 소속 구단, 정치권과 여론 등은 인권침해라며 거세게 비판하였고 박은선 소속구단인 서울시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여자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성별검사는 기본적으로 여성선수에게만 요구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고, 성별을 결정하는 요소가 염색체, 생식기관, 내/외부 생식기, 호르몬, 2차 성징, 지정된 성별/사회적인 양육, 성별정체성 등 다양하며, 이 중에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없고, 성별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양상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자스포츠선수에게 요구되는 성별검사 자체가 의학적으로도 논쟁적이며 선수의 프라이버시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 ▶ 방승인에 대해 호모포비아에 근거한 공갈협박을 가한 전 매니저에 대해 형사 처벌

2013년 3월 함께 일한 연기자의 동성 간에 일어난 성적 행위를 촬영하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전 매니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전 매니저에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과 공갈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성 간에 일어난 성적 행위가 공갈협박의 빌미가 되고 특히 피해자가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여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못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사건은 다행스럽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많은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공갈협박을 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질까봐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다.

## 10. 성별정정

### ▶ 서울서부지법, 성기성형 수술 없이 FTM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법적 성별 정정 기준의 위헌성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년 3월 남성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FTM 트랜스젠더 5명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의 정정을 허가했다.<sup>61)</sup>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5.자 2012호파4225 결정 등 신청인들은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획일적으로 요구하며,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다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11월 유사한 사건에서 다시 30여 명의 FTM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하면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에 위헌성이 있다며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sup>62)</sup>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406 결정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수술의 위험성, 신체훼손의 정도, 장기간의 수술 기간과 고비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정정허가에 있어서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

위와 같은 3월의 서울서부지법 결정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에서도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결정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지방법원들 역시 많은 실정이다.

한국에서 성전환자가 법적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대법원이 2006년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내린 후 마련한 대법원 예규「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을 참고하여 각 하급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침은 성장환경진술서, 인우보증서, 정신과진단서,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를 포함한 수술확인서 등의 서류와 미성년자가 아닐 것, 혼인 상태가 아닐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것 등의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성별정정을 원하는 성전환자들에게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 법원의 성기 사진 제출 요구 등 성별정정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됨

2013년 서울의 한 법원은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한 MTF 트랜스젠더에게 'MTF 성전환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사진(2장 이상으로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을 제출하라고 자의적으로 명령해 물의를 빚었다.<sup>63)</sup> KBS, 「법원, 성전환 신청자에 "성기 사진 제출하라"」, 2013. 10. 12. 보도 2013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건 외에 2012년에도 한 가정법원이 성별정정을 신청한 FTM 트랜스젠더에게 '탈의한 상태의 전신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sup>64)</sup> 뉴시스, 「성전환자에 성기 사진 요구한 '황당 판사'」, 2013. 10. 14.자

현재에는 대법원 예규를 바탕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요구하더라도 신청인이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법원은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종종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수술부위를 시검하겠다고 해서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

비슷한 사례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FTM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 후 병역신체검사를 받는데 있어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성기를 확인한 데 대해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sup>65)</sup> 국가인권위원회 2007. 7. 20. 07진인533 결정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성별 인식, 실제 생활이나 외양보다 성기 모양에 집착하는 법원의 시각을 바꾸고 성별정정사무가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11. 가족구성권

### ▶ 동성결혼 법제화 운동 본격화

동성커플의 공개 결혼식이 열리면서 동성결혼 이슈가 크게 공론화되었다. 9월 7일,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영화사(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김승환(이하 김조-김 부부)은 서울 도심에서 ‘당연한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식은 여러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예술인 및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 거행되었다. 미디어상에서도 널리 보도되어 동성결혼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축의금은 모두 LGBT 센터 건립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sup>66)</sup>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 국내 첫 공개 동성 결혼식, 〈한겨레〉 2013. 9. 7.자



2013.5.15. 김조광수 김승환 결혼식 발표 기자회견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성소수자인권단체가 중심이 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가 발족되었다.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슬로건으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와 김조-김 부부는 사회변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세계인권 날’인 12월 10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인 12월 11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구청은 “현재로서는 동성 혼인신고를 수리할 민법상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김조-김 부부에게 혼인신고서 불수리 통보서를 보냈다.<sup>67)</sup> 이에 앞서 서울시 은평구청에서는 2004년 3월 동성 커플이 혼인 신고서를 제출, 불수리 처분한 전례가 있었다. 『게이결혼식 커플 혼인신고서 수리 거부, 〈한겨레〉 2004. 3. 9.자 당사자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는 2014년 중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sup>68)</sup> 『김조-김 부부 혼인 신고 불수리, 〈경향신문〉 2013. 12. 17.자 이는 2004년 인천지방법원의 사실혼 레즈비언커플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합 문제를 둘러싼 최초의 소송이 될 전망이다.



2013.12.10.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12.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 ▶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을 위해서 강요받는 생식능력제거 수술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재생산권 침해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별 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와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별정정을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은 불임을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는 자녀의 복리와 신분관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신분관계의 혼란방지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자녀의 복리 또한 미리 선형적, 일괄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으며, 젠더 평등과 다양성이 증진된 사회에서 자녀의 복리는 훨씬 보장될 것이므로, 자녀의 삶이 제한되는 지점을 트랜스젠더 부모에게 지우는 것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의 보고서(2013)는 간성 아동에 대한 자기 동의 없는 성 할당 수술과 성전환자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호르몬제 투약 및 수술 등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언급하고 있다.<sup>69)</sup> [유엔 고문특별보고관 보고서\(2013\)](#)

### ▶ 레즈비언 커플 입양/인공수정 위해 덴마크로 이주

4년 전 결혼식을 올린 한국의 레즈비언 부부 P씨와 J씨는 덴마크 이민을 결심했다. 한국에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병원에서는 법적 부부가 아닌 이들에게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정자은행 이용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2013년 12월 14일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 마련한 “레즈비언 임신, 어떻게 할 것인가?” 강연회에 참석해 그간 한국에서 임신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어려움, 덴마크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했다.<sup>70)</sup> [한겨레 2013.12.15. “레즈비언 부부, 한국 떠나는 사연”](#)

한국에서 동성커플에 대한 인정과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 양육의 욕구가 있는 동성커플은 개별적으로 정자제공자를 구해서 비혼모가 되거나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에서 임신이 성공하더라도 정자제공자와의 관계, 동성 배우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가족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타인의 간섭이나 위협, 사회적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 13. 사회보장

#### ▶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가입의 문제에서 성소수자가 배제, 차별받고 있음

현재 트랜스젠더는 성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성별 정정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를 받게 되는데, 국가는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 외과적 수술 등 전 과정을 건강보험을 벗어난 비급여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들은 높은 의료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다. 또한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행위가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절한 비용이 매겨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sup>7)</sup> 더 자세한 내용은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 '더 나은 미래로, 의료 개선방향' 참조. <http://transroadmap.net>

또한, 동성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현실에 놓여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여, 의료급여대상자 등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모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이 때 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직장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동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관계에 놓여있는 이성 부부와 달리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서로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법에 따른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 배우자 1인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또 다른 배우자는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가입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차별적인 상황을 겪게 된다.

## 14. 난민

### ▶ 반동성애 혐오 폭력과 국가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난민신청한 우간다의 레즈비언

2013년 4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난민신청을 한 A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난민이 인정된 최초의 사례이다.<sup>72)</sup> 서울행정법원 2013.4.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항소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이에 항소하였다. (2014.1 항소심 원소 패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A씨는 2011년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A씨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내자, 법무부장관은 2012년 6월 19일에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상황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동성애자인 점, 우간다 정부는 법으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탄압하고 있는 점, A씨의 마을 사람들은 A씨가 한국에 입국하기 2개월 전에 A씨의 모친에게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내라고 협박하였고, A씨의 집에 불을 질러서 모친과 여동생이 사망한 점을 들어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이에 항소하였다.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당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 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

###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징병제로 인해 난민이 되는 한국의 성소수자들

2013년 4월 한국인 B씨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당국은 B씨가 한국에서 동성애자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2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입국해 난민수용소에서 지낸 지 5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난민 결정에 따라 B씨는 무국적 상태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병역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체복무제가 없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년 6개월 가량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는 군대나 감옥에서 받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난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트랜스젠더로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국가에서는 한국의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 고도의 성전환 관련된 의료적 조치를 받아야만 하는데 아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우며, 차별이나 폭력을 보호할만한 법제가 부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sup>73)</sup> 한겨레 21 2013.10.28. "한국인 예다씨, 왜 무국적 난민을 택했나"

## 15. 여론/미디어

### ▶ 동성애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중'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동성애 및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 비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관용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관용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갤럽이 2013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24명을 조사한 결과,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해 찬성 25%, 반대 67%로(의견 밝히지 않음 8%) 나타났다. 20대의 52%, 30대의 40%가 찬성한 반면 40대는 19%만이 찬성해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다. 한국갤럽의 2001년 조사 결과에서는 찬성이 16.8%, '반대'가 66.9%로(의견 밝히지 않음 16.3%)로, 이와 비교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늘어났다.

2013년 6월 5일자 <워싱턴포스트>에는 PEW 리서치 센터가 39개국 37,65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동성애에 대한 관용도' 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다.<sup>74)</sup> 「어떤 국가가 가장 동성애에 불관용적인가?」, <워싱턴 포스트> 2013. 6. 5.자 이에 따르면, '사회가 동성애를 수용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39%가 '수용해야한다'라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07년 조사 결과 수용 의견이 18%로 집계되었던 한국이 2013년 39%로 두 배 이상 상승하여 여타 국가들보다 급격히 관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도 59%로 나타나 선진국 중 관용도가 가장 낮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연령별로는 18~29세 71%, 30~49세 48%, 50대 이상 16%로 세대별 인식 차이가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일본은 연령별로 각각 83%, 71%, 39%로 세대별 차이가 큰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관용도가 높다.

동성애에 대한 시선의 변화  
(PEW리서치센터)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 %	2007 %	2013 %	변화
대한민국	18	39	+21
미국	49	60	+11
캐나다	70	80	+10
이탈리아	65	74	+9
스페인	82	88	+6
독일	81	87	+6
영국	71	76	+5
일본	49	54	+5
케냐	3	8	+5
칠레	64	68	+4
중국	17	21	+4
아르헨티나	72	74	+2
이스라엘	38	40	+2
이집트	1	3	+2
멕시코	60	61	+1
말레이시아	8	9	+1
우간다	3	4	+1
레바논	18	18	0
인도네시아	3	3	0
가나	4	3	-1
체코	83	80	-3
폴란드	45	42	-3
요르단	6	3	-3
러시아	20	16	-4
터키	14	9	-5
팔레스타인	9	4	-5
프랑스	83	77	-6

## ▶ 동성애자에 대한 선정적 보도 행태, 사회적 인식에 '악영향'

2013년 9월 10일자 <한국일보>에서는 「국내 최대 남성 동성애 커뮤니티서 난리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는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마약 투약을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HIV/AIDS 감염인이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라며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등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였다.

2013년 8월, 종합편성채널 MBN은 남성동성애자가 이용하는 휴게텔에 잠입 취재한 후, 동성애 성매매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로 내보냈다. 이용자의 신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러한 무단 촬영에 항의하는 장면 등도 그대로 담아 내보냈다. 이 휴게텔은 금전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소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소재로 이목을 끌고자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동성 간의 성관계가 '성매매'라는 형태로 음지에 존재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동시에 동성애 자체를 불건전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 16. 조사/연구

### ▶ 한국 최초의 LGBTI를 아우르는 대규모 설문/면접 조사가 이루어짐

1994년에 결성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이하 욕구조사)를 연구 용역으로 기획·발주하였다. 이 욕구조사는 2012년 6월부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 책임연구회가 수행하고 있다. 2013년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320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가 참여한 조사이다.

이 욕구조사는 한국 LGBTI 커뮤니티의 현재를 살펴보고 이들의 사회적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2014년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에서 마련한 실태조사나 LGBT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파악이 전무한 상황에서 성소수자 모임과 인권단체, 연구자, 국가가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소중한 근거가 될 것이다.



변화를 위한 참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 조사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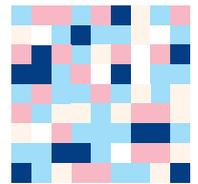
# 한국의 LGB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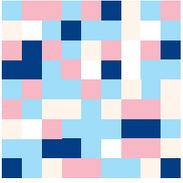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 인권 현황 2013

- I. 2013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개관
- II. 한국의 무지개 지수
- III. 영역별 현황

## IV. 한국의 성적 지향 · 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 IV. 한국의 성적 지향 · 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관련 법률			
영역	법률명	연혁	내용
군대	군형법	<p>*1962년 제정</p> <p>*2009년 제92조를 제92조의5로 변경하면서 법정형을 징역1년에서 징역2년으로 상향조정. 2010. 2. 3.부터 시행</p> <p>*2013년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되면서 군형법상 성폭력 규정 역시 개정되는 과정에서 ‘계간’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항문성교’ 라는 용어로 대체(국방부 의견 반영).</p>	<p>*개정 전에는 제15장(기타의 죄)에 제92조 (추행)로 “계간<sup>76</sup> 남성간 항문성교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군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접촉까지 처벌함.</p> <p>* 2009년 개정법은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의5(추행)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정형 상향 조정</p> <p>* 2013년 개정법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p> <p>* 2002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sup>77</sup>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참조.</p> <p>* 2013년 민홍철 의원이 여성간 성행위까지 처벌하자고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물의를 빚고 철회</p>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회법	<p>*2001년 제정</p> <p>*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30조 조사대상 조항에서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이동</p>	<p>*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 등의 교육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규정(제2조 3호),</p> <p>*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1항)</p> <p>* 진정이 없더라도 차별행위 근거가 상당하고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3항)</p> <p>*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별행위가 인정된 경우 구제 조치, 시정, 징계 등을 조정, 권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제42조, 제44조 등)</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p>
수용 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p>*2007년 행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항 신설</p> <p>*2008년부터 시행</p>	<p>“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p> <p>*권리구제로는 소장 면담과 청원 등을 규정(제116조 및 제117조)</p>
수용 시설 / 군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p>*2009년 군행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항 신설</p> <p>*2010년 5월부터 시행</p>	<p>*조항만 약간 다를 뿐 위와 동일하게 규정(제6조, 제101조, 제102조)</p>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성별정정 제도	성전환자이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p>*2006년 대법원 결정78)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07년 제정</p> <p>*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79) 국가인권위원회 2008. 8. 25. 06진차525706진차573 병합 결정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성별정정 허가요건 중 성기수술, 만20세 이상,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 받았을 것 등 9가지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하였다.를 일부 수용하여 2009년 개정</p> <p>*2011년 대법원 결정80)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를 허가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도록 개정</p> <p>*2013년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되면서, 성별정정허가신청 가능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p>	<p>*성별정정 허가신청과 허가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p> <p>*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목록과 조사사항 조항 규정</p> <p>“제3조(첨부서류) ①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li> <li>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수술 의사의 소견서[성전환수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결과 신청인이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의 성으로 외부성기 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국내의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신체감정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li>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li> <li>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i)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ii)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부터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정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그러한 성적 정체성 내지는 자아의 발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정체성과 자아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li> </ol>

			<p>6. <u>부모의 동의서</u></p> <p>제6조(조사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한다.</p> <p>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p> <p>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p> <p>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p> <p>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p> <p>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p>
형사절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훈령)	*2005년 제정	<p>*제2조 4호에 '성적 소수자' 정의규정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라고 규정</p> <p>*제4장(수사) 제3절(사회적 약자 보호)의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에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u>아웃팅 제한</u></p> <p>*제4장(수사) 제4절(유치인 인권보장)의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제4항에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규정</p> <p>* 최초로 행정규칙에 '성적 소수자' 라는 용어 등장</p>
형사절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해양경찰청훈령)	*2007년 제정	<p>*조항만 약간 다를 뿐 내용과 구성은 위와 동일</p>

형사절차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 2006년 시행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 2007년 시행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해양경찰청훈령)	* 2011. 9. 시행	* 위와 동일하게 규정 * 이전에는 위 성적 소수자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경찰청훈령과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 추가됨
군대 / 수용시설	징계입찰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 2011. 2. 제정	제5조(차별금지) 징계입찰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급·나이·종교·학력·출신지역·용모·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국방부령)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81) 국가인권위원회 2007. 7. 20 07진인533 결정 참조. 이 결정은 법원 결정에 의해 남성으로 성별정정한 트랜스젠더가 징병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결정문 및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징병전담의사가 하체를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사진(靚診)한 사건에 대해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해 수차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권고한 것이다에 따라 2008년 단서조항 삽입	*징병 신체검사서에서 비뇨기와 검사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하나, 성전환자인 경우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검사를 대체 (제8조 제2항 10호 단서)
군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국방부령)	*1978. 12. 7. 일부개정 당시 '성도착증'을 심신장애 평가기준으로 도입  *1999. 1.30, 일부개정 당시 '성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라는 용어 등장. 이후 유지.	*"성주체성장애·성적 선호장애 등"에 대해 정도에 따라 신체등위 3급, 4급, 5급, 7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실무적으로 동성애의 경우 성적 선호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주체성장애가 적용. '성적 선호장애'는 일반적인 정신질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p>군대</p>	<p>부대관리훈령 (국방부훈령)</p>	<p>*2006년 2월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sup>82)</sup> 당시 부대는 피해자에게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라며 동성과의 성관계 사진을 찍어 올 것을 요구하였고 HIV/AIDS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바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위한 강제체혈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6. 26. 06친차87 전원위원회 결정) 이 사건의 자세한 경과와 내용은, 정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의 물꼬를 트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무지갯빛 인권 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 모듬자료집」, 동성애자인권연대?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8, 8-12쪽을 참조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2006년 4월 &lt;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gt; 제정</p> <p>*위 &lt;지침&gt;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2008년 국방부 훈령 제 898호 &lt;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gt;으로 일부 수정, 격상</p> <p>*2009년 &lt;부대관리훈령&gt;이 제정되면서 내용변경 없이 통합</p>	<p>*제4편(사고예방)의 제5장(동성애자 병사의 복무)으로 실려 있음</p> <p>*평등취급, 차별금지, 아우팅 제한, 교육 강화, 동성애자 병사의 모든 성적 행위 불인정 등을 규정</p>
<p>기타 정책</p>	<p>헌혈기록카드 (보건복지부고시)</p>	<p>*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내에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음</p> <p>*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sup>83)</sup>국가인권위원회 2004. 8. 3. 03친차66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헌혈 전 작성해야 하는 헌혈기록카드의 문진사항 중 채혈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최근 1년 사이에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라는 항목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온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차별로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권고 이후 '여성 간의 성관계'만을 제외하였고, '남성 간의 성관계'는 여전히 헌혈금지사유로 하고 있다.</p> <p>에 따라 2005년 '동성과의 성접촉' 항목을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 항목으로 변경</p> <p>*2009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보건복지부고시로 변경</p>	<p>* 최근 1년 이내에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을 한 경험이 있는 때에는 헌혈하지 못하도록 하여 <u>이성간의 성접촉과 남성간의 성접촉을 '특정'성에 있어서 다르게 설정</u></p> <p>* 질병관리본부의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에서는, 「성접촉이라 함은 깊은 키스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규정</p>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조례

연도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교 내	광 역	경기도학생인권 조례	* 2010. 10. 제정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 내	광 역	광주광역시 학 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 례	* 2011. 10. 제정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 내	광 역	서울특별시 학 생인권 조례	* 2012. 1. 제정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u>성별정체성</u> ,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u>성소수자</u> ,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최초로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등장함  * 차별금지사유로서의 명시를 넘어 개인정보보호권, 소수자학생으로서의 권리 등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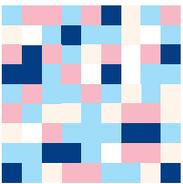
일 반	광 역	서울특별시 인 권기본조례	* 2012. 9. 제정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 동 청 소 년	광 역	서울특별시 어 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2012. 10. 제정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 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 육	광 역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 2013. 6. 제정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 <sup>84)</sup>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 (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 다.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 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일 반	기 초	광명시 시민인 권 조례	* 2011. 9. 시행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 교, 장애정도,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 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재혼, 사별, 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설 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성 평 등	기 초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 2013. 8. 제정	제16조(성소수자 인권 보장) 시장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기능) ① [성평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 문에 응한다. 7.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 한국의 LGBTI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 인권 현황 2013

# 부록



---

## 1. 2013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원문 링크

---

### ● 남성성기성형 없이 FTM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5.자 2012호파4225 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 (결정이유 실시)

---

### ● 레즈비언에 대한 첫 난민 인정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항소)

---

### ●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대한 학교 측 책임 인정한 원심 및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50445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

### ● 퀴어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처분 취소 확정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

### ●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 현수막 게시에 대한 마포구청의 불허가 인권침해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9.자 12진정0909300 결정

---

##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 ▶ 단체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아이샵 iSHAP	ishap.org
동성애자인권연대	lgbtpride.or.kr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maporainbow.net
망할세상을 횡단하는 LGBTQI 완전변태	wanbyun.org
비온뒤무지개재단	rainbowfoundation.co.kr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pinks.tistory.com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cafe.naver.com/youthsexualright
언니네트워크	unninetwork.net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chingusai.ne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sangdam.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rc.org

### ▶ 네트워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quv_korea(공식트위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org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act.org
차별금지법제정연대	ad-act.net

### ▶ 문화/미디어

대구퀴어문화축제	queerfes@daum.net
레인보우팩토리	cinerrainbow.blog.me
레즈비언 공동체 라디오 방송 레주파	lezpa.net
서울LGBT영화제	selff.org
친구사이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chingusai.net
퀴어문화축제	kqcf.org
퀴어영화제	kqff.co.kr

---

▶ 대학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 사람	www.queerkorea.org
서울대학교 성적소수자 동아리 큐이즈Qis	queerinsnu.com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blog.daum.net/come__together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blog.naver.com/ewhabyunnal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레인보우 피쉬	rainbowfish.kr
충신대학교 성소수자쉼터 무지개클럽 in 총신	blog.naver.com/rainbowincsu

▶ 온라인 매체/아카이브

국제인권소식 통	tongcenter.org
바이섹슈얼 웹진	bimoim.tistory.com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queerarchive.org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 · 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	transroadmap.net
해외 LGBT 소식 블로그 Mitr	mitr.tistory.com

▶ 연구/상담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별의별상담연구소	878878.net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blog.daum.net/lesbian2013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law.org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runtoruin.com/2059

▶ 법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hopeandlaw.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kpil.org

▶ 정당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facebook.com/npplgbt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justice21.org/go/rainbowrights

▶ 종교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교인연대	facebook.com/chasegiyeon
-----------------	--------------------------

---

### 3.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2006.11)

※ 번역 및 출처: 국제인권소식 통 www.tongcenter.org

#### 요그야카르타 원칙: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적용 원칙

#### 전문

우리, 국제인권법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전문가 국제 패널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없이,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세계 전지역의 사람들에게 폭력, 괴롭힘, 차별, 배제, 낙인, 편견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경험이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장애, 건강, 경제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과 결합되어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같은 폭력, 괴롭힘, 차별, 배제, 낙인, 편견이 학대 받는 이들의 고결함과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그들의 자존감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악화시킬수 있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감추고 공포를 갖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겪어온 이유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이거나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거나, 합의하에 동성간의 성관계를 갖거나,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거나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거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구분되는 특정 사회집단에 소속된 경우라는 것을 인식하며, '성적지향'은 이성, 동성 혹은 여러 성에게 깊은 감정, 애정, 성적 끌림을 느낄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

‘성별정체성’은 각 개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gender)의 경험으로, 이 경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성과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식(내과적, 외과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의 외형이나 기능을 변형하는 것도, 자유로이 선택된 것이라면 포함할 수 있다)이나, 의상, 말투, 버릇 등 기타의 젠더 표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간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단언한 것, 현행 인권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그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나이와 성숙단계에 따라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권,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완전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절대 금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 성적 권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 국가는 한쪽 성이 열등하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이나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편견과 관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국제적인 공동체가 성과 생식건강, 위압,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책임감있게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해 왔음을 명심하며,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과 경험에 적용 가능하도록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매우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기술은 반드시 현행 국제인권법에 따라야 하며,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발맞추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있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구체적인 생활과 경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를 마치며 이에 이 원칙을 채택한다.**

---

## 제1원칙. 인권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권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다양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가진 인간 모두가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할 자격이 있다.

국가는:

- A. 모든 인권의 보편성,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에 관한 원칙을 헌법이나 다른 적합한 법률에 포함시켜야 하며, 모든 인권의 보편적 향유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B. 모든 인권의 보편적 향유라는 원칙과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을 수정하여야 한다.
- C.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하고 강화하도록 교육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 D.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하여 사람의 정체성의 모든 면이 상호연관되어 있고 불가분함을 인정, 확인하는 다원적 접근을 국가 정책과 의사결정 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에의 권리

모든 인간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모든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그 차별로 다른 인권의 향유까지 영향을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예 그러한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차별은 어떤 것이라도 법으로 금지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차별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구분, 배제, 제한, 편향으로서 법 앞에서의 평등, 평등한 법의 보호,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권의 평등한 인정, 향유, 이행을 무효화시키거나 해치려는 목적을 가지거나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

차별은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장애, 건강, 경제적 지위 등 다른 사유에 근거한 차별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국가는:

A. 평등의 원칙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원칙이 헌법이나 다른 적합한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 개정이나 해석을 이용하여 이 원칙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실제로 이 원칙들이 효과적으로 실현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동이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에서의 동성간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거나, 사실상 이를 금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형법 및 기타 법적 조항을 폐기하고, 동이가 인정되는 연령은 동성간 및 이성간 성행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C. 공적, 사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인권을 똑같이 향유하고 행사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이들이 적절한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차별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E. 국가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응할 때에는, 이 차별이 다른 형태의 차별과 중첩되는 양상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F.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열등하거나 우월하다는 사고와 관련된 편견적, 차별적 태도나 행동을 철폐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법적 권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격의 일부이며, 자기결정, 존엄성,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법적으로 성별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료적 시술, 예컨대 성전환 수술이나, 불임, 호르몬 치료 등이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결혼이나 자녀 여부와 같은 상태를 성별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을 막기 위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숨기거나, 억제하거나, 부인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는:

A. 모든 사람들이 민사상의 문제에 있어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합당한 법적권한을 갖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리, 소유, 획득(유산 상속 포함), 관리, 향유, 처분할 때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포함된다.

B.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별정체성이 충분히 존중되고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출생증명서, 여권, 선거인 명부, 기타 서류 등 개인의 젠더/성별이 표기된 국가발행의 모든 신분서류에 개인이 스스로 내면적으로 규정한 성별정체성이 반영되게 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이러한 절차들은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차별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의 존엄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E. 신분서류 상의 변경사실이 법이나 정책상 성별로 신원을 증명하고 사람들을 구분하도록 하는 모든 상황에서 인정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F. 성별전환이나 성별재지정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표적화된 프로그램을 책임지

---

고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원칙. 생명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생명을 빼앗기는 등 자의적으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동기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의 동성간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이유로, 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A. 동기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의 동성간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폐지해야 하며, 그러한 조항이 폐지될 때까지는 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B. 동기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의 동성간 상호합의된 성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면제하고 현 사형집행 대기자들을 모두 방면하여야 한다.

C.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국가의 지원이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인명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시켜야 하며, 그러한 공격이 국가 공무원에 의한 것이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것이든 모두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증거가 발견되면 책임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원칙. 신변의 안전에 대한 권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은 신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든 간에 폭력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치안유지활동과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가정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폭력의 위협, 폭력 선동과 이와 관련된 괴롭힘에 대해서 적합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피해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내세워서 그러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그러한 폭력범죄가 철저히 조사되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증거가 발견되면 책임자들이 반드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금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책과 배상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E.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폭력의 근간이 되는 편견들을 퇴치하기 위해, 실제적, 잠재적 폭력 가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 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도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가족, 집, 통신에 대한 측면 뿐만 아니라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포함한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는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그리고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성적 또는 기타 관계에 대한 결정과 선택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포함된다.

국가는:

A. 동이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에서의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적인 영역, 사적인 의사결정, 인간관계

---

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자의적 간섭을 받지 않고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동이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에서의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모든 법을 폐기하고, 동이가 인정되는 연령이 동성간 및 이성간 성행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사 및 기타의 법률 규정이 동이가 인정되는 연령에서의 상호합의된 성행위를 사실상 범죄화하는데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D. 의상, 말투, 버릇으로 나타나는 것 등 성별정체성의 표현을 금지하거나 범죄화하는 법이나, 개인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신체를 변형하려는 기회를 부정하는 법은 폐기하여야 한다.

E. 동이가 인정되는 연령 이상에서의 상호합의된 성행위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되어 유치중에 있거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감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방면하여야 한다.

F.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지를 일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가 타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또는 원치 않게 공개되거나 공개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 제7원칙.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어느 누구도 자의적 체포나 구금을 당해서는 안 된다. 법원 명령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것에 의해서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해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체포 사유와 혐의의 본질을 고지받고, 신속하게 법정에서 서고, 범죄기소여부와 관계없이 구금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는다.

국가는:

---

A.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체포나 구금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의 차별적 적용을 초래하거나 기타 편견에 근거한 체포가 발생할 여지를 주는 모호한 말로 표현된 형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B.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체포 사유와 혐의의 본질을 고지받고, 범죄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법정에 서고, 구금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재판을 요청할 자격을 보장받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의 자의성에 대해 경찰관과 기타 법집행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D. 모든 체포와 구금에 대해 날짜와 장소, 구금 사유를 포함한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또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체포와 구금을 식별해내기 위해, 적절한 권한을 위임받고 능력을 갖춘 기관이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거나 또는 형사기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법에 의해 설립된 능력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사법기관에서 공정하고 공개된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국가는:

A. 민형사 소송을 비롯해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기타 모든 사법적, 행정적 소송의 해당 사법절차 각 단계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근절하며, 또한 어느 누구도 소송당사자, 증인, 변호인, 판결자로서의 자신의 진실성이나 인격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공격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편견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동기가 되어 사람들이 형사기소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판사, 법원 직원, 검사,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평등의 원칙 및 차별금지의 원칙과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원칙.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자유를 박탈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인도적으로, 또 인격체로서의 천부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국가는:

A. 구금시설을 배정할 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한층 더 주변화시키거나, 폭력이나 잔혹한 대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에 처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생식 건강에 관련된 요구, HIV/AIDS 정보와 치료 이용, 원하는 경우 성별 재지정 시술과 호르몬요법 및 기타 치료 이용 등,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감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수감인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적합한 수감시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젠더 표현 때문에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기 쉬운 모든 수감인들을 위해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이러한 보호조치로 인해 일반 수감인들이 경험하는 수준 이상으로 권리가 제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배우자 방문이 허용되는 경우, 파트너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수감인과 억류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방문이 허용

---

되어야 한다.

F. 국가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한 NGO들이 구금시설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G. 구금시설에 종사하는 공적, 사적 부문의 교도소 직원과 모든 기타 직원들을 위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기준과 평등원칙 및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훈련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원칙.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은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국가는:

A. 피해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이유로 자행되는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과, 또 이러한 행동을 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이유로 자행되는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배상이나 변상, 또 해당되는 경우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을 비롯한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거나 또는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공적, 사적 부문의 경찰, 교도소 직원, 그리고 모든 담당자를 대상으로 훈련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

## 제11원칙.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거래,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실제 혹은 추정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신매매, 거래, 성적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세울 때에는 실제 혹은 추정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또는 이런 저런 정체성 표현을 이유로 가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 등,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이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A. 실제 혹은 추정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신매매나 거래, 성적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예방하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이러한 입법이나 조치가 이에 취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범죄화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C. 실제 혹은 추정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신매매나 거래, 성적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당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들, 예컨대 사회적 배제, 차별, 가족이나 문화공동체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독립의 결여, 주거의 부재,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차별적인 사회인식, 주거나 숙박시설 또는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이용시 나타나는 차별로부터의 보호 미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교육적, 사회적 조치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 제12원칙. 노동권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생산적인 일을 할 권리, 공정하고 양호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

A. 공공 및 민간 부문 고용에서 직업훈련, 채용, 승진, 해고, 고용조건과 보수조건 등에 관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철폐하고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경찰직과 군인직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직급의 공무원직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평등한 고용과 승진기회를 보장하도록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하며, 차별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제13원칙.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A. 고용급부, 육아휴직, 실업급여,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 또는 의료급여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신체변형 포함), 그 밖의 사회보험, 가족수당, 장례급여, 연금, 질병이나 사망으로 발생한 배우자나 파트너에 대한 부양의 상실에 대한 수당 등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아동이 사회보장체제내에서 사회적, 복지적 혜택을 제공받을 때,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어떤 형태의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C.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빈곤퇴치전략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14원칙. 적절한 생활수준에의 권리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적절한 식량, 안전한 식수, 적절한 위생설비와 피복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와 지속적인 생활조건의 개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적절한 식량, 안전한 식수, 적절한 위생설비와 피복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평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5원칙.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게 보호받는 등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A. 임시보호시설과 기타 긴급구조시설을 포함하여, 저렴하고, 살기에 적합하며, 접근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면서 안전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하는 것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결혼상태나 가족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지 않는 퇴거 집행을 금지하고, 이주대책에 대한 권리, 즉 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나은 대체토지와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권리 등을 포함하여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결혼상태나 가족상태에 따른 차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혹은 기타 적합한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와 상속에 대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D.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특히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혐리스가 되기 쉽도록 만드는 요인들 – 사회적 배제, 가정폭력 및 기타 폭력, 차별, 경제적 독립 결여, 가족이나 문화공동체로부터의 거부 등 – 을 해결하고 이웃을 통한 지원과 안전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E.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때문에 주거를 잃거나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관련 기관들이 인지하고 이에 민감해지도록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제16원칙. 교육권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그리고 그들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고려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교육시스템 내에서 학생, 직원, 교사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교육이 각 학생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그들 잠재력의 최대치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모든 종류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C. 교육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존중하면서, 이해, 평화, 관용, 평등의 정신으로 인권에 대한 존중과 각 아동의 부모와 가족 구성원, 문화적 정체성, 언어, 가치관에 대한 존중을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D. 교육방법, 교과과정, 그리고 교육자원은 특히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 관련 학생과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의 특수한 요구 포함 –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E. 학교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등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폭력으로부터 다양한 성적지향

---

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학생, 직원, 교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F. 그러한 배제나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이 보호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참여적인 방식으로 그 학생들의 최선의 이익이 발견되고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G. 학생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혹은 그것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처벌 당하는 일이 없이, 교육기관내의 규율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H.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평생교육의 기회와 자원이 개방되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시스템 내에서 이미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겪은 성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원칙.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가 있다. 성과 생식건강은 이 권리의 기본적 측면이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성과 생식건강 관련 등 의료기관, 용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의료기관과 의료 용품 및 서비스를 계획할 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면서 이를 염두에 두어 모든 사람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마련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의료기록의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D.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차별, 편견 및 기타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E.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성실하게 고지된 동의에 입각하여 의학적 치료와 보호에 관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F. 모든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 교육, 예방,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차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 성별 전환과 관련한 신체 변형을 원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비차별적인 치료,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H.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환자와 그 파트너를 치료해야 하며 여기에는 파트너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I. 의료부문 종사자들이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

## 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그 어떤 형태의 의료적 또는 심리적 치료나 시술, 검진을 강제 당하거나 의료시설에 감금되어서는 안 된다. 분류에 관해 반대 견해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그 자체는 의료문제가 아니며, 치료되거나 교정되거나 억제될 수 없다.

국가는:

A. 문화에서 비롯되었든 다른 원인이 있든 간에 행동이나 외모, 지각된 젠더규범에 대한 고정관념 등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유해의료행위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

---

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아동이 나이와 성숙단계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제공한 동의가 없거나, 그 동의서가 아동에 대한 모든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성별정체성을 강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료적 시술로써 아동의 신체를 돌이킬 수 없이 변형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아동이 의료 남용의 위험에 처하거나 당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D.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HIV/AIDS 또는 기타 질병에 대해 백신, 치료 혹은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 등과 관련해 비윤리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의료적 처치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 남용을 조장하거나 촉진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남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보건기금제공사업이나 프로그램들 - 개발보조 성격이 있는 것 등 - 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F. 의료적, 심리적 치료나 상담에서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치료, 교정, 억제시켜야 할 의료적 문제로서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19원칙.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의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국경에 관계 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할 자유뿐만 아니라, 발언이나 행동, 복장, 신체 특성, 이름 선택,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가는:

A.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

---

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법적 권리의 옹호, 자료의 출판, 방송, 협의회 조직과 참여,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이용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얻고 전달하는 것이 포함된다.

B. 국가가 규제하는 매체의 생산물과 편성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이슈에 관해 다원적이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조직에서의 직원 채용 및 승진 규정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발언이나 행동, 복장, 신체 특성, 이름 선택,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한 표현 등,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공중보건, 공공안보라는 개념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차별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F.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보와 사상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공개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20원칙.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화적 시위가 목적인 경우를 포함해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있다. 사람들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단체나, 또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에 관해 알리거나 그들 사이의 소통을 증진시키거나,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을 차별없이 조직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단체들을 인정해 왔다.

국가는:

A.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이슈에 대한 평화로운 조직, 결사, 집회, 옹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단체와 집단에

---

대한 법적 인정을 획득하는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특히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공중보건, 공공안보라는 개념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권의 행사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사유에 근거해서 방해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경찰력과 기타 물리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D. 경찰과 기타 관련 공무원이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E. 자발적인 단체와 집단에 대한 정보공개규칙이 실제로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쟁점을 다루는 단체나 집단 혹은 그 구성원들을 차별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21원칙.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법의 평등한 보호를 부인하거나 차별하는 법, 정책 혹은 관행을 정당화하는데 이러한 권리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A.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믿음을 혼자 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갖고 실천할 권리, 믿음에 대해 간섭받지 않고, 믿음이 강제되거나 강요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의 쟁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 신념 및 믿음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증진하는 것이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22원칙.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국가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국경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의 모국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로의 입국, 출국 혹은 귀국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근거로써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가는:

A. 이동과 거주 자유권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3원칙. 망명을 요청할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를 포함하여,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가 어떤 사람을 다른 나라로 이주, 추방, 송환시킬 때, 그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고문, 박해 혹은 다른 형태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공포에 직면할 근거가 충분히 있는 국가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난민지위와 망명을 인정하는 사유로서 수용될 수 있도록 법을 검토, 수정, 제정하여야 한다.

B. 정책이나 관행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망명희망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C.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문, 박해 혹은 다른 형태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직면할 수 있는 국가로 이주, 추방, 송환되지 않도록 한다.

## 제24원칙. 가족을 형성할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가족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어떤 가족도 구성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입양이나 의학적 도움을 통한 출산(정자 또는 난자기증에 의한 수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혈통이나 결혼으로 규정되지 않는 가족형태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과 정책에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가족도 구성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 가족관련 사회복지와 기타 공적급여, 고용, 이주에 관련된 차별 포함 – 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아동과 관련하여 공립 혹은 사립 사회복지기관, 법정, 행정당국 혹은 입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와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또 아동이나 가족 구성원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그러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와 결정에서, 아동이 개인적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으면 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견해는 아동의 나이와 성숙단계에 따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 동성결혼이나 동성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이성간 결혼이나 파트너십에 주어지는 모든 자격, 특권, 의무,

---

혹은 혜택이 동성결혼이나 동성파트너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F. 이성 비혼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격, 특권, 의무, 혹은 혜택이 동성간 비혼 파트너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G. 결혼과 기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파트너십은 배우자나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이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도록 해야 한다.

## 제25원칙.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모든 시민들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없이 공무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선출직에 입후보할 권리,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입안에 참여할 권리,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 등 공적 기능을 하는 모든 단위의 정부직과 일자리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A. 경찰직과 군인직 등을 포함하여 공적 기능을 하는 모든 직급의 공무수행 참여 등 공적 및 정치적 생활과 사안들에 참여할 권리가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또한 이를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충분히 향유될 수 있도록 법을 검토, 수정, 제정하여야 한다.

B. 공적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또한 이를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안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 제26원칙.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A.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또한 이를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사안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지는 집단 등,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집단에 대한 지지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 존중을 촉진하여야 하며, 본 원칙에서 언급된 인권에 대한 존중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 제27원칙. 인권을 증진시킬 권리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 보호와 실현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새로운 인권 규범을 개발하고 논의할 권리와 그 규범이 수용되도록 옹호할 권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추구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국가는:

A.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의 증진, 보호, 실현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가진 인권 활동가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이슈와 관련해 활동하는 인권 활동가를 공격 표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캠페인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인권 활동가들이 그들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및 그들이 옹호하는 인권이슈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인권단체와 기관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참여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인권 활동에 대응하여 행해지는 폭력, 위협, 복수, 사실상의 차별 또는 법적 차별, 압박, 혹은 기타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의 자의적 행위로부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이슈에 종사하는 인권활동가들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활동가가 어떤 인권 문제에 종사하든지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같은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E.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단체의 인정과 인가를 지원해야 한다.

## 제28원칙.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침해는 포함하여, 모든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은 효과적이고, 충분하며 적절한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효과적인 구제책과 보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제공하거나 적절하게 선급금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이 상환, 보상, 복위, 변상, 재발방지보증, 그리고/또는 기타 적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수정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B.구제책이 적시에 적용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C.구제책과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관과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이슈들에 대해 모든 직원들이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

D. 모든 사람에게 구제책과 보상을 받는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E. 보상을 받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보상을 가로막는 금전적 혹은 다른 형태의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F. 본 원칙에 부합하는 국제인권기준의 존중과 엄수를 증진시키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 각급 공립학교의 교사와 학생, 전문기관, 잠재적인 인권침해자를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 제29원칙. 책임성

본 원칙에서 다루어진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이 침해된 모든 사람은, 그 침해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정부 공무원이든 아니든-으로 하여금 그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자격이 있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연관되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면책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연관되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적합하고 접근가능하며 효과적인 형사, 민사, 행정 및 기타 소송 절차와 감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B. 본 원칙에서 설명된 범죄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실제 혹은 추정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저질러지는 모든 범죄의 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적합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자를 기소하고 재판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C.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감시하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기구와 절차를 설립해야 한다.

D.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막는 모든

---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 추가 권고 사항

모든 사회구성원과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실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본 원칙을 지지하고, 본 원칙이 전세계에서 시행되도록 장려하며, 현장을 포함한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업무에 본 원칙을 수용한다.
- B. 유엔 인권이사회는 본 원칙을 지지하고, 국가가 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진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
- C. 유엔인권특별절차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본 원칙을 각 특별절차의 권한 이행에 결합시킨다.
- D.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1996/31에 따라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의 NGO를 인정하고 승인한다.
- E. 유엔 인권조약기구는 판례나 정부보고서 검토 등 인권조약기구 각각의 권한 이행에 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고, 적절한 경우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한 인권법 적용에 관해 일반논평 또는 기타 해석적 문서를 채택한다.
- F.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보건기구와 UNAIDS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바탕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G.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나, 박해당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본 원칙을 결합시키고,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기타 서비스

---

를 받는 것이나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한다.

H. 지역의 인권조약기구 뿐만 아니라, 지역 및 하위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간 조직은 본 원칙을 장려하는 것이 여러 인권메카니즘, 절차, 기타 협정 및 추진계획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I. 지역인권재판소는 본 원칙 중 그들이 해석하는 인권조약과 관련있는 원칙들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판례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J.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단위의 인권 NGO들은 각자의 특정한 임무 체계 속에서 본원칙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

K.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모든 인도적 활동이나 구호작업에 본 원칙을 수용하고, 원조나 기타 서비스 제공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L. 국가인권기구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본 원칙을 존중하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그들의 업무에 통합시킨다.

M. 의학, 민사 또는 형사사법, 교육 부문 등에서의 전문 기관들은 본 원칙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도록 자신들의 업무와 지침을 검토한다.

N. 상업 기관들은, 내부 직원들을 대할 때 본 원칙을 존중하는 역할과, 국내외적으로 본 원칙을 증진시키는 역할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O. 대중매체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의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대한 관용과 수용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P. 정부 또는 민간의 기금후원자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NGO 혹은 기타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

본 원칙과 권고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원칙의 어느 부분도 국제, 지역, 또는 국내의 법과 기준에서 인정되는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